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1 선고 2020나84824, 2020나84831(병합) 판결

[사해행위취소 · 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1 선고 2020나84824, 2020나84831(병합)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6 선고 2019가단5237220, 2019가단530218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육삼신, 조세형, 유태훈

피고, 항소인 1. B 주식회사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엽

변론종결 2021. 9. 14.

판결선고 2021. 10. 21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6. 선고 2019가단5237220, 2019가단

5302186(병합)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 B 주식회사,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,

① 94,179,474원과 그중 14,259,474원에 대하여는 2019. 9. 21.부터, 79,92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0. 2.부터 각 2019. 11. 9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② 6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1. 29.부터 2019. 12. 2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E은 피고 B 주식회사, C과 공동하여 위 1의 ②항 기재 돈 중 3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1. 29.부터 2019. 12. 2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다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

①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9. 8. 28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
② 피고 D는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9. 8. 28. 접수 제229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라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
① 피고 C과 피고 F 사이에 2019. 8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
② 피고 F은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1. 접수 제124009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
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
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은주, 판사 정 원, 판사 김유성

별지